

의정부지방법원 2021. 11. 10 선고 2020가단1024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20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1-1, 13-1, 13, 12, 11-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-2) 부분 4㎡ 지상에 있는 본건물 및 별지2 감정도 표시 11-1, 12, 22, 21-1, 11-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-2) 부분 10㎡ 지상에 있는 판넬 부속건물을 각 철거하고,
나.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2021. 1. 1.부터 위 나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,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10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나. 다.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3 도면 표시 1, 2, 3, 4,

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50㎡를 철거하라.

이 유

1. 당사자의 지위

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,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강원 철원군 C 대 232㎡ 지상에 위치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앞서 살펴본 사실 및 증거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으로 월 22,750원을 받아온 사실, 피고가 2021. 1. 1.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1-1, 13-1, 13, 12, 11-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-2) 부분 4㎡ 지상에 있는 본건물 및 별지2 감정도 표시 11-1, 12, 22, 21-1, 11-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-2) 부분 10㎡ 지상에 있는 판넬 부속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, 원고의 “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”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2020. 7. 24.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,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후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1. 1. 24.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. 즉,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건물 철거, 토지 인도 및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태지영

별지1

부동산의 표시

1. 강원 철원군 D 대 104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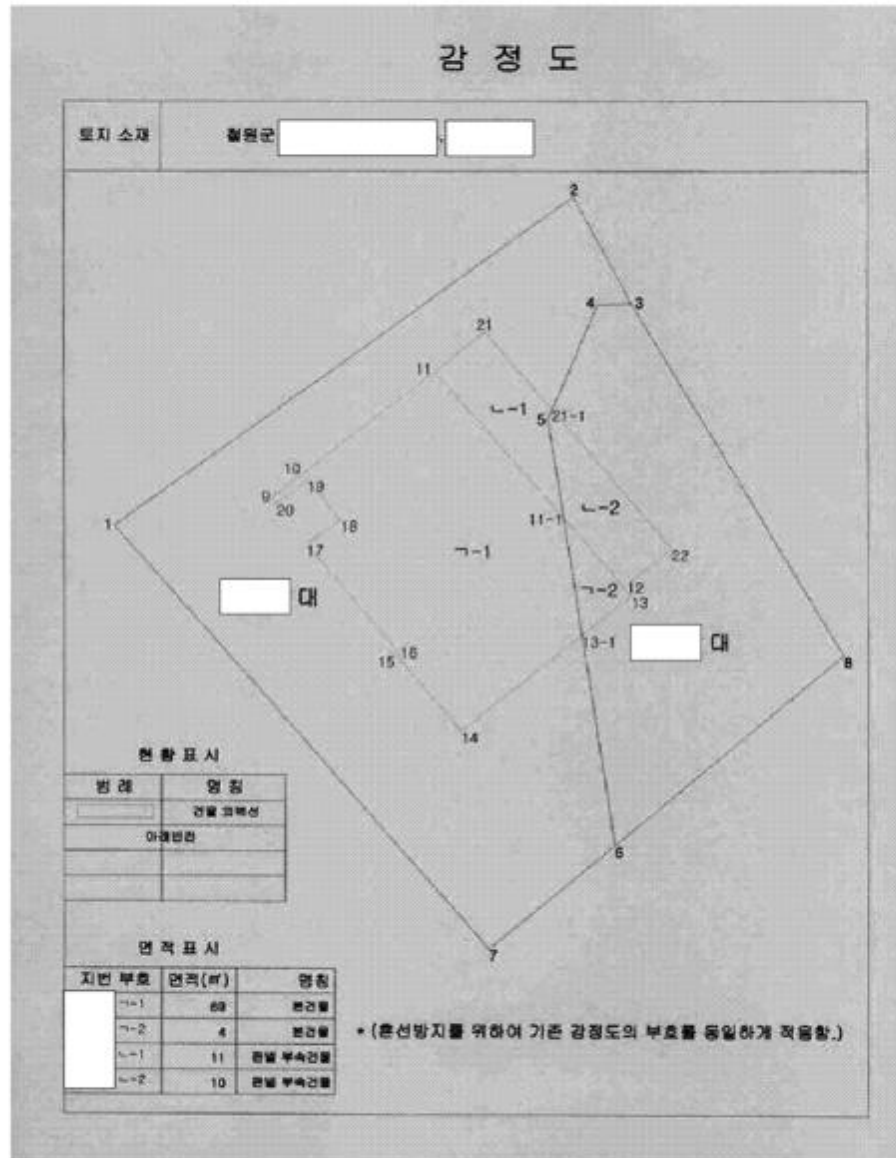
2. 강원 철원군 C, D

[도로명주소] 강원도 철원군 E

세멘트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

75.04㎡. 끝.

별지2



별지3

도면

